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9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9.

발 의 자 : 임광현 · 최기상 · 진선미

김영환 · 박희승 · 정성호

윤후덕 • 서미화 • 임오경

이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 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.

세무사는 지방자치법상 결산검사위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인법인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 공정한 조세수입(세입)을 달성하기 위한 납세지원은 물론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도 세무사의 사명에 해당함. 아울러 대 국민 납세서비스 업무에 있어 세무사의 다양하고 책임성 있는 역량을 강화할필요가 있음.

이에 세무사가 세입은 물론 세금지출(세출)부문인 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그리고 보조금·지원금·출연금·기부금 등의 적정성 검증과 조세지출 사후관리 업무 등 세무사 고유의 업무인 세 출 관련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사가 설립하는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다양하게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3인 이상의 세무사가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5 제3항).
- 다.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5제3항 중 "5명"을 "3명"으로 한다.

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4(지출의 적정성 검증) 공공기관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은 적절한 재정지출, 위탁사업의 운영이나 조세특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조사·정산·검증·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의5(사원 및 이사 등) ①	제16조의5(사원 및 이사 등) ①		
• 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	③		
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.	<u> 3명</u>	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제20조의4(지출의 적정성 검증)		
	공공기관 및「공익법인의 설립		
	・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		
	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		
	인은 적절한 재정지출, 위탁사		
	업의 운영이나 조세특례의 관		
	리 등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조		
	<u>사·정산·검증·확인 등의 업</u>		
	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		